

- 다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
 -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

◆ **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1368호**
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인가취소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30일
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설립인가 취소내역

조 합 현 황				처분이유	처분근거	처분일자
인가번호	조합명	대표	소재지			
2010-9 (2010.06.29.)	연제의료 생활협동조합	마주르 경옥	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, 나산스위트 501호	조합 운영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허가 취소됨	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5호	2016.06.23.

2. 기타사항

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,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,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(행정심판법 제27조, 행정소송법 제20조).

※ 문의 :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
 (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, 전화 2133-5364)

◆ **서울특별시공고 제2016-1371호**

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
‘도로법’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자들에게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기본법’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 및 ‘지방세기본법’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년 6월 30일
 서 울 특 별 시 장